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30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

주요골자

- 제3조제2항제4호의 “국가안전기획부충북지부장”을 “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”으로 변경함.

첨 부

-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중 “국가안전기획부충북지부장”을 “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협의회구성및운영) ①(생략)</p> <p>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.</p> <p>1-3. (생략)</p> <p>4. <u>국가안전기획부충북지부장</u></p> <p>5-14. (생략)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3조(협의회구성및운영) ①현행과 같음.</p> <p>②.....</p> <p>.....</p> <p>1-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</u></p> <p>5-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